

특수교육 서비스 학부모 안내서

(절차상 보호조항 포함)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2009년 6월 수정판

소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사, 행정관, 직원은 모든 학생의 동등함과 존엄성을 믿으며 학생의 최고의 가능성을 향해 교육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저희들의 미션은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맞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내책자에서 특수교육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연방 장애인 교육법(Federal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에 따라 귀하의 권리, 자녀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절차적 보호조항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는 연방 및 주법의 책임 이행이기도 합니다. 본 안내서를 학 년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특수교육 평가 절차를 처음 받을 때 또는 처음 평가를 요청할 때
- 학년 도 동안 처음으로 주(State) 고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때
- 징계처분으로 인해 재배정이 필요할 때
- 자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지속조항에 대한 허락취소를 원할 때
- 언제라도 사본을 원할 때

목차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으십시오. 자녀가 가장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구와 협조하는데 본 안내책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본 안내 책자를 읽은 후에, 특수교육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자녀 교육 관련 질문이 있을 경우 자녀 교사, 학교 교장 또는 특수교육 지원부서 행정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뒷장에 연락 번호가 있습니다. 다음 번호로 전화할 수도 됩니다.

교육구 불만 대처 부서/ 학부모 자원 네트워크(CRU/PRN) **The District's Complaint Response Unit/Parent Resource Network** **(800) 933-8133**

CRU/PRN의 목표는 학부모들이 외부 고소절차 또는 적법절차를 사용할 필요 없이 교육구 자체에서 학부모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CRU/PRN에서는 교육구 방침 및 절차, 수정 강령, 교육구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자녀 교육 관련 정보 및 훈련을 부모님들에게 제공한다. CRU/PRN은 소교육구 및 지원부서 간의 교량역할을 하며, 인터넷 자원 링크 및 전화 핫라인을 관리한다. (위 전화번호를 참고하십시오.)

커뮤니티 자문위원회(CAC) **The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213) 241-6701**

CAC는 캘리포니아 법령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자와 학부모사이의 지속적 교류를 장려하며 특수교육 해당 지역 계획(SELPA) 연례 서비스 및 예산에 대한 진전을 교육구에 자문한다. CAC는 매달 회의를 개최하며 정보 및 훈련을 제공하며 모든 소교육구 학부모 및 직원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 참여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CAC 회의는 매달 두 번째 월요일이며 회의 날짜는 (213) 241-6701로 전화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다문화 자문위원회(SEMAC) **The Special Education Multicultural Advisory Committee** **(213) 241-6701**

주(State) 정부 및 연방정부 법 준수를 위해 특수교육부서의 장애 학생으로 영어 학습생(English Learner)으로 규정된 학생과 학생 가정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다. SEMAC는 지속적인 교육자, 학부모, 지역학교 학부모 교류 및 참여를 위해 회의를 한다. SEMAC는 매달 회의를 개최하며 정보 및 훈련을 제공한다. 소교육구 해당 학부모 및 직원은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참석할 수 있다. 회의 날짜를 (213) 241-670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수교육 서비스	Page 1
자녀가 특수교육이 필요 한가? 특수교육이란 무엇인가? 3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도 있는가? 언제 아동이 특수교육 서비스 받을 자격이 되는가?	
특수교육 절차	Page 3
1 단계: 평가 추천 2 단계: 평가 3 단계: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IEP) 구성 및 실행 4 단계: IEP 검토	
특수교육 절차상 추가 권리	Page 11
서면 통지서를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자녀 관련 활동을 허락할 권리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속조항 허락취소의 권리 교육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녀에게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구 약식 논쟁 해결• 캘리포니아 교육부 중재• 캘리포니아 교육국 중재 대안 적법절차 청문회 균일 고소절차(Uniform Complaint Procedure)를 사용하여 불만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고소절차• 주(State) 고소절차 차별 및 괴롭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 허가 또는 추천 없이 사립학교 배정을 환불받을 수 있는 안내사항	Page 24
처벌에 대한 안내사항	Page 24
대리 부모에 대한 안내사항	Page 27
흔히 사용되는 두문자어	Page 28

특수교육 서비스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 합니까?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사항을 충족하려고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구 산하 모든 학교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학부모 또는 보호자, 적절할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이 함께 하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팀의 명칭은 가이던스 커미티, 학생 학업 팀 또는 학생 성공 팀(SST)이라고 합니다. 본 팀은 학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내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애학생은 1973년 사회 복귀법 504항에 의거하여 교실 변경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교사는 학교 행정관에게 편의 사항 및 변경이 자녀에게 적절 한가 **504항 평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회의의 날짜를 통보 할 것이며, 본 회의에 참여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회의에서 학생이 일반 교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의 사항, 변경, 과외지도 전략을 세울 것이며 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4항에 대한 추가 질문 대답을 교육구 504항 및 장애학생(Section 504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안내 책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학생들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교육 자격성은 학생이 정식 평가를 받은 후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에 의해 결정합니다.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자원을 고려한 후에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교육서비스란 무엇인가?

특수교육 서비스는 법적으로 자격 여부를 인정받은 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 고안한 교수법입니다. 특수교육은 3살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학생이 졸업하거나 22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관련서비스는 교통편, 발달 관련, 교정 및 기타 지원 서비스로 특수교육 학생이 서비스를 받으므로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3세 이하 아동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3세미만의 아동도 발달 촉진을 위한 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서비스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교육구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시력, 청력 또는 심각한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기타 발달장애 또는 위험한 발달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확정된 위험한 상태의 학생들은 리지날 센터의 조기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추가 안내사항은 교육구 유아 및 영아 지원사무실 (213) 241-4713으로 전화하십시오.

언제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IEP 팀에서 자녀에게 장애사항이 있다는 것과 교육 진전을 위해서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해야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격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폐증
- 청각 장애
- 청각-시각 장애
- 정서 불안
- 성립된 의료 장애(3세-5세 아동)
- 난청
- 정신박약
- 복합 장애
- 지체 장애
- 기타 건강 장애
- 특정 학습장애
- 스피치 또는 언어 장애
- 뇌 외상
- 시각 장애

특수교육 절차

특수교육 절차를 통해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 만약, 자격이 된다면 어떤 특수 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특수교육 절차에는 기본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1 단계. 평가 추천
- 2 단계. 평가
- 3 단계.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IEP) 개발 및 실행
- 4 단계. IEP 검토

1 단계: 평가 추천

학부모, 보호자, 교사, 기타 교직원 커뮤니티 멤버 중 누구라도 아동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수교육 평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사무실마다 특수교육 평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학교는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답신을 해야 합니다. 방학 5일 동안까지는 답신 날짜에서 제외합니다. 교유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 귀하에게 2가지 용지, 특수 교육 평가 통지서 및 특수 교육 평가 계획서를 보낼 것입니다. 평가 이후 교육구에서 자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내렸을 경우, 이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본 결정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자녀에게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에 대한 권리”를 참고하십시오.

특수교육 평가 계획서는 자녀의 특수교육 자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평가 방법 및 목표를 설명합니다. 자녀가 평가받기 전, 귀하는 먼저 특수교육 평가 계획서에 서명함으로써 허락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평가 계획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 서명하고 허락해야 합니다. 학교는 서명한 평가 계획서를 받은 후, 최고 5일의 방학을 면제하고 60일 이내에 평가를 끝내고 IEP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첫 번째 평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 했거나 하려고 하면 교육구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며 행정판사로부터 부모 허락없이 아동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절차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자비로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home school)을 시킬 경우 교육구는 귀하의 결정을 강제로 반복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주(State) 관리하의 아동 평가에 부모의 허락이 필요치 않습니다.

1. 상식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2. 주(State) 법에 의거하여 부모권리가 소멸됐을 경우.
3. 부모이외 다른사람에게 교육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여했을 경우.

2 단계: 평가

평가절차는 아동이 장애사항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며 어느 정도 어떤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결정합니다. 평가절차로 개인 테스트, 학교에서 아동 관찰, 학교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과의 인터뷰, 학교 기록, 보고서, 과제 샘플 검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가 동안

- 아동의 장애에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분야를 평가할 것입니다.
- 장애가 있다고 예측되는 분야의최소 1명 전문가 및 기타 여러 분야의 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 평가 절차는 자녀의 학력, 발달,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언어로 실시할 것이며 행정관이 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외에는 자격 있는 통역사를 사용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 평가에는 자녀의 장점 및 단점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절한 테스트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합니다.
- 본 평가는 학생의 시각적, 신체적, 또는 말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각색할 것입니다.
- 테스트, 평가 자료 및 절차는 인종, 문화, 성적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독립적(외부) 교육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귀하의 권리

언제든지 자비로 교육구 직원이 아닌(예, 외부 평가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부터 자녀를 평가받고 평가의 결과를 IEP 회의에서 고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본 결과 보고서를 적법절차 청문회에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독립적(외부) 교육평가 비용을 교육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에 외부 평가비용 청구를 할 경우,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에 동의 또는 (2) 평가가 적절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적법절차 청문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청문회 절차를 사용하여 최종으로 교육구 평가가 적절했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외부 교육평가를 받을 권리는 있으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구에서 외부 교육 평가비용을 지불할 경우, 평가 장소 및 평가인 자격은 교육구에서 첫 번째로 평가 받는 것과 같은 기준이어야 합니다.

교육구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립비용으로 단 한번 외부 평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개별적 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계획 및 실행

자녀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개별적 교육프로그램(IEP) 회의를 할 것입니다. IEP 회의는 귀하와 교육구 직원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갖게 됩니다. 본 회의에서 IEP 팀은 평가 결과 및 자녀가 특수교육 자격성이을 의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성이 성립되면 본 회의에서 IEP를 계획할 것입니다.

IEP 팀 요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귀하의 대변인;
- 학교 행정관
-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적절할 경우, 특수 교육 제공인
- 일반 교육 교사, 아동이 일반 교육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 기타, 아동, 귀하 또는 학교 측에서 초대하고 기타 사람
- 아동을 평가하는데 사용했던 평가 절차에 대해 또는 평가 결과 및
- 교육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언급한 사람 중 한 사람 일 수도 있음.

- 귀하가 서면으로 허락하면 IEP 팀이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EP 회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까?

학교에서 IEP 회의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 회의 학부모/보호자 참여 통지서(Notification to Parent/Guardian to Participate in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Meeting)*는 회의 전 적당한 시기에 보낼 것입니다. 본 통지서에 회의 날짜, 시간, 장소, 회의 목적, 참여하는 사람들, 회의 참여하는 사람이 회의를 녹음할 수 있는 권리 성명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IEP 팀의 중요한 요원입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학교에 회의 날짜 변경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귀하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로 컨퍼런스 또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하는 것 같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귀하에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력 장애인일 경우, 또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통역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에서 본인 없이 회의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IEP란 무엇인가?

IEP는 IEP 팀이 계획하고 동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 자녀의 교육적 현 수행, 기능 수행도 및 교육적, 기능적 필요사항
- 연례 성취 목표 및 목적
- 특수 교육 및 관련서비스, 배정 및 필요에 따른 수정사항 및 받을 서비스
- 아동이 14세가 되는 해부터, 개별적 전환 계획(ITP)을 준비하여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의 활동을 계획한다. 추가 안내는 교육구 안내서 *The ITP and You*를 참고한다.
- 자녀에게 최저 제한적 환경의 적절한 배정을 결정한다.
- 통학 서비스 필요 여부
- 자녀 진단도 평가 및 보고 절차

IEP 회의 후에, IEP 사본을 받을 것입니다. IEP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IEP를 설명하고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IEP의 특정한 분야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아동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구하면, 가능할 경우, IEP를 모국어로 번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사항은 교육구 안내서 *The IEP and You*를 참고하십시오.

최저 제한적 환경 배정이란 무엇입니까?

IEP 팀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 어떤 교육 환경 배정이 가장 적절한가 결정하게 됩니다. 적절한 배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IEP 팀은 필히, 아동이 최대한으로 장애 없는 아동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수학급, 특수학교 또는 일반 교육 학급에서 데리고 나와 교육해야 하는 경우는 학생의 장애 성격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반 학급에서는 추가 보조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 제한적 환경부터 최고 제한적 환경 배정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학교

- 일반 학급에서 배려 및 조절을 받는다.
- 일반 학급에서 추가 보조 및 지원을 받는다.
- 일반 학급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는다.
- 일반 학급에서 자원 전문인 서비스를 받는다.
- 일반 학급 및 특수교육 학급
- 특수교육 학급

§ 특수학교 또는 센터

- 특수교육 학급

§ 사립학교

- 양쪽 등록(공립 및 사립학교)
- 사립학교 또는 센터

§ 가정 또는 병원

- 가정 또는 병원에서 지도

§ 입주

- 주(State) 특수학교
- 사립학교 또는 센터

IEP 팀이 거주지 학교보다 다른 장소에서 자녀의 IEP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다는 결정을 있지 않는 한, 자녀는 거주지 학교로 가게 됩니다. 다른 장소를 정할 경우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State) 특수학교에서는 청력장애, 난청, 시력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설 세 곳이 있습니다: 프리몬트와 리버사이드에 California Schools for the Deaf와 프리몬트에 California School for the Blind가 있으며 청력장애 학생을 위한 두 곳의 장소에서는 유아부터 21세까지의 학생을 위한 입주 및 일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alifornia School for the Blind에서는 5세부터 21세까지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State) 학교에서는 평가 및 기술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스테이트 학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캘리포니아 교육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http://www.cde.ca.gov/sp/ss> 또는 IEP팀에게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통학 서비스는 언제 제공합니까?

아동이 학교 통학 또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데 통학서비스가 필요한지는 IEP 팀이 결정합니다. 통학서비스는 대부분 특수교육 배정, 서비스, 활동이 거주지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일 때에 제공합니다. 통학서비스는 개인적 건강, 사회 판단력, 안전에 관련한 적절한 의사소통이 안될 경우, 안전한 통학을 위해 조절사항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IEP 팀은 아동이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필요한 편의 또는 조절사항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통학서비스는 필요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며 귀하나 자녀의 편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구 허락 없이 임의대로 다른 학교에 등록시킬 경우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학서비스가 필요하다고 IEP 팀이 결정한 후, (5)일 이내에 언제 어디서 자녀를 태우고 내려줄지 통보를 할 것입니다. 특수기구 또는 준비사항이 필요할 경우 몇 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통학서비스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은 1-(800) LA-BUSES 또는 1-(800) 522-8787로 연락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Medi-Cal 자격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내용은 Medi-Cal 자격이 있는 장애아동 부모를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법 (IDEA) 규정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국은 부모에게 IEP에서요구하는 모든 구체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구는 연방 정부 Medicaid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LAUSD 학생들에게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드는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연방 교육 지원금은 지출 비용의 아주 작은 일부에 해당합니다. 1986년 하원의회에서 특정 건강-관련 서비스 비용을 Medicaid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 프로그램이라고 부름)에 청구할 수 있다고 허락했습니다. 많은 아동들과 가정은 다른 보험이 없이 학교 Medi-Cal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일 경우 학교-차원 의료 치료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부모님이 서비스를 받기위해 크리닉과 병원을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Medi-Cal 서비스 비용 환불에는 특정 건강 서비스 및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건강 서비스에는 아동 개별 교육 계획 (IEP)에 나와 있는 평가 및 치료, 예를 들어 청력검사, 카운슬링, 간호사 서비스, 작업훈련, 물리치료, 스피치 치료, 통학관련 서비스를 포함 합니다. Medi-Cal 규정에 의하면 학교-근거 서비스 제공인은 병원, 재활원 및 기타 다른 장소의 전문인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edi-Cal 자격을 갖 춘 장애아동 부모는 특수교육 평가 계획 또는 IEP 허락 서명을 할 때, 교육구가 서비스 비용을 Medi-Cal에 청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청구 빈도수는 평가 허가 및 부모가 IEP에 허가한 서비스를 Medi-Cal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따릅니다. LAUSD는 환불을 받기위해 학생 기록, 의료 기록 및 기타 학생관련 기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근거 Medi-Cal 환불은 다른 곳에서 학생이 Medi-Cal 도움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안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장애학생 Medi-Cal 제한 금액이 없습니다. LAUSD는 아동 IEP 관련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가족 보험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장애 학생에게 무료 적절 공립교육(FAPE)을 제공해야 하는 IDEA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Medi-Cal 자격이 있는 학생 부모는 LAUSD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받지 못하도록 Medi-Cal 환불 불허(Parent Medi-Cal Non-Authorization to Bill) 약식을 LAUSD Medi-Cal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사항을 (213) 241-0558로 연락하십시오.

여러가지 요소 가정 재정 및 장애로 인해 Medi-Cal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Medi-Cal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LAUSD CHAMP 헬프라인 1-866-742-2273로 연락하십시오.

4단계: IEP 검토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최소한 일 년에 한번씩은 IEP 회의를 개최하여 자녀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 지 검토하게 됩니다. 추가로, 매 3년마다, 필요에 따라 재평가 합니다.

자녀의 교육적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연중 언제라도 귀하 또는 학교 측에서 재평가를 신청하거나 IEP 검토를 위해 IEP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편지를 보내므로 IEP 회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필히 최대한 5일의 방학일자를 제외한,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교에 편지를 보내거나 교육구 어느 학교에서나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평가요청서(Request for Special Education Assessment)를 완성하며 학교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귀하의 허락서 없이 아동을 재평가 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가 필요하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재평가는 일 년에 일 회 이상 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절차상의 기타 권리

상기 언급한 권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서면 통지서를 받을 권리
- 자녀 관련 활동을 허락할 권리
- 자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속조항 허락취소의 권리
- 자녀 교육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
- 절차상 안전조치에 관한 권리
- 불만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구는 아동을 평가하거나 평가 거절 전, 적절한 시기에 귀하에게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추가로, 교육구에서 자녀의 신상, 교육 배정, 또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변경 또는 변경 거절 전에 서면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할 것입니다.

- 교육구가 제안 또는 거절하는 사항 설명
- 사항을 제안 또는 거절하는 이유
- 대안 설명 또는 대안 거절 이유
- 제안 또는 거절하는 사항에 근거 정보
- 제안 또는 거절하는 사항에 대한 기타 요소
- 본 안내사항에 설명한 절차상 보호조항 설명
- 본 안내서를 받는 방법 (특수교육 절차상 보호조항을 설명하는)

아동에 대한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 및 배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귀하에게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장기적 변동사항이란 학일 10일 이상 적용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아동이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를 포함합니다.

확실히 가능치 않은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통지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야하며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국어로 통지서를 보낼 수 없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을 경우, 말로 통지서를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녀 관련 활동을 허락할 권리

교육구가 첫 번째 특수교육 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자녀에게 제공하기 전, 귀하는 잘 알고 허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제공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이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제공한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

재평가를 받을 경우, 교육구는 최대한으로 귀하의 허락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번 시도했는데 답장이 없을 경우 교육구는 귀하의 허락 없이 재평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거절할 경우, 교육구는 행정 판사로부터 부모 허락없이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교육구에서 귀하의 허락이 필요한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대리인에게 아동의 교육 기록을 보여주기 전, 귀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기록을 보내는지 명부를 만들 것입니다. 교육구는 법에 의해 귀하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만 귀하의 허락을 요구할 것입니다.

귀하의 허락 의미는:

- 관련된 모든 내용을 모국어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완전히 설명했다.
- 무엇을 요청하는지 이해했으며 교육구가 허락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도 좋다.
- 자발적인 허락이며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아동의 현 평가 및 재평가 기록을 검토 또는 모든 학생이 치른 테스트 결과를 보기 위해 교육구는 귀하의 허락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모가 한 가지 서비스 또는 활동을 거부하다고 하여 학교는 다른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속조항 허락취소의 권리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조항이후 언제라도 서면으로 자녀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귀하의 허락을 위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허락을 취소할 경우, 교육구는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계속 제공 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조항을 중단하기 전에 필히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

교육기록은 자녀에 대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교육기록에는 자녀가 장애 학생이라는 정체성, 평가 결과 및 교육 배정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기록은 기밀입니다.

자녀 학교 기록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IEP 또는 자녀의 정체성, 평가, 교육배정 또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회의가 있기 전, 요청한 날짜부터 (5)일 이내에 자녀의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다. 교육구는 자녀에 대한 기록을 찾거나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
- 자녀기록의 사본을 서면 또는 말로 요청한 날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는 복사 비용을 받을 수도 있으나 비용 때문에 권리행사에 지장을 줄 경우, 사본을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 기록에 대한 해석 또는 설명의 정당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한다.
- 대리인이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수 있다.
- 학교에서 수집하여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는 교육기록의 종류 및 장소를 요청에 의해 통보 받을 수 있다.

상기 언급한 귀하의 권리는 장애 학생에게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주(State) 병원 또는 청소년 및 성인 발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도 적용됩니다.

학생 기록, 자녀 IEP,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류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방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에 (FERPA) 허가하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람 또는 연방, 주(State) 법령을 준수하는 에젠시만 볼 수 있습니다. FERPA에 의하면 교육기록을 개인 또는 에젠시에게 보여주기 전에 귀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구 및 기타 공공 기관에서는 학부모와 허가된 교육구 직원 이외의 학생의 기록을 보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본 기록에는 기록을 보는 사람이름; 본 날짜 및 기록 사용 허가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학부모 보호자로서 교육구 다른 통보가 없는 한, 귀하는 자녀관련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자녀 외 다른 아동의 기록이 있을 경우, 자녀의 기록만 검사, 검토할 수 있거나 특정한 정보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이 프로그램을 끝낸 후 (5)년 동안 교육 기록을 보관합니다. 그 이후 기록을 없앱니다.

기록에 틀린, 오인될 수 있는, 또는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를 침범하는 정보가 포함됐을 경우, 교육구에 정보 교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신청이 들어온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교육구에서 정보 교정을 거부할 경우, 결정 내용과 이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통보할 것입니다.

본 신청이후, 교육구는 자녀 교육 기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승리할 경우 교육구는 내용을 이에 따라 수정하고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자녀의 교육기록에 귀하의 이의제기 성명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성명서는 원하지 않는 내용이 학교 기록에서 제거되거나 교정될 때까지 기록에 포함할 것입니다. 자녀의 기록 또는 이의제기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귀하의 성명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을 해결할 때의 절차상 안전조치에 관한 권리

자녀 평가 결과 또는 IEP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우려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교육구 직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다음 여러 가지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비공식 분쟁해결 (IDR)

비공식 분쟁해결 절차("IDR")은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IDR은 신속하고 비공식적이며 중재나 적법절차보다 우호적입니다. IDR 절차에서 학부모는 자신의 문제 및 우려사항을 말하고 교육구는 문제에 대해 가장 신속한 방법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IDR 절차를 통해 자녀의 IEP 불일치 사항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IEP 10페이지(학부모 우려 페이지) "학부모/학생 (18-21) 로스앤젤레스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하겠습니다" 본인은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여 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박스에 표기하십시오. 그리고 행정관/대리인과 만나 본 문제를 토론하고 좀 더 자세히 우려사항을 표현하겠다고 말하십시오.

IEP 행정관/대리인과의 회의는 가능한 한, IEP 하루 내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회의 동안 귀하는 IEP 행정관/대리인과 "개별적 교육계획(IEP) 문제 비공식 분쟁해결(IDR) 요청서"를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IDR 용지를 완성하여 교육구 특수교육 부서로 제출합니다. 며칠 내에, 교육구 행정관이 불일치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연락할 것입니다.

IDR 절차에서 창출한 모든 문서를 받을 것입니다. IDR 절차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IEP 회의를 열어 본 내용을 IEP에 포함하고 통합할 것입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적법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중재

"오직 중재"는 자발적 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중립적인 중재인이 귀하와 교육구의 토론 및 불일치 해결을 돕는 것입니다. 중재인은 교육구 직원이 아니며 합의내용에 이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재인은 편견없는 사람으로 주(State)에서 선정하며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련한 법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중재 절차에는 본인, 지정 중재인, 결정력이 있는 교육구 대표가 참여합니다.

행정 청문회 사무실("OAH")은 주(State) 기관이며 오직 중재 및 적법절차 청문회를 주관합니다. 오직 중재를 요청하려면, 오직 중재 요청서 ("Mediation Only Request Form")를 완성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 다음 주소에 보내야 합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ttention: Special Education Unit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
전화번호: (916) 263-0880
팩스번호: (916) 263-0890

다음 주소로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십시오.

Due Process Department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333 South Beaudry Avenue, 17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팩스번호 : (213) 241-8917

자녀 출석학교 또는 온라인 www.oah.dgs.ca.gov에서 오직 중재 요청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OAH 사무실에서 귀하의 오직 중재 요청을 받은 후, 중재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오직 중재 절차에는 변호사 또는 채용한 옹호인 참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재 회의에서 중재인은 귀하와 교육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도모할 것입니다. 중재인은 교육구와 귀하에게 대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비밀이며 적법절차 또는 민사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교육구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합의 내용을 서면 합의문으로 작성합니다. 귀하와 교육구 대표는 합의문에 승인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한 합의문은 주(State) 및 연방정부 법에 의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오직 중재를 신청 한다고 해서 차후 적법 절차 청문회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중재 절차에서 불일치 내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귀하 또는 교육구는 적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청문회

적법 절차 청문회는 장애인 교육법 (IDEA)에 의거한 학부모 및 교육구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교육구 또는 부모는 식별 절차 시작 및 변경, 평가 또는 교육 배정, 무료 적절 공립교육 (FAPE) 위반에 대한 제안 또는 거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절차는 고소 통지서로 시작하며 의무적 해결 모색 회의를 수반한 해결 기간, 편견 없는 행정 판사 앞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육구 측에서 해결 모색 회의를 주도합니다. 행정 청문회 사무실(OAH)은 대안 중재 및 적법 절차 청문회를 주관합니다. 해결에 도달하는데 모든 적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 중 언제라도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면, 적법 절차 불만이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1. 적법 절차 고소통지서 제출

적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적법절차 고소통지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녀 이름, (2) 자녀 거주지 주소 또는 아동이 노숙인일 경우, 아동 연락 정보, (3) 아동 출석 학교, (4) 문제 설명, (5) 아는 한도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적법절차 고소 공소시효는 2년 입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위반사항이 고소장 날짜 이전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교육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는 모두 본 타임라인을 적용합니다.

OAH에서는 적법 절차 고소장 견본이 있습니다. 본 견본을 자녀 출석학교 또는 온라인 www.oah.dgs.ca.gov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통지서를 완성한 후, 자녀 출석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고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다음 주소에 보내십시오.

Due Process Department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333 South Beaudry Avenue, 17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팩스번호 : (213) 241-8917

다음 주소로도 보내야 합니다 :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
Attention: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
전화번호 : (916) 263-0880
팩스번호 : (916) 263-0890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히 상기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교육구는 법이 요구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고소 통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 판사가 5일 이내에 통지서 내용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 양측에 판결문을 보냅니다.

고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1) 교육구가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승인하고 해결 회의로 적법절차 고소를 대신할 경우 (2) 적법절차 청문회 시작 최소 5일 전 청문회 판사가 수정을 허락할 경우. 청문회 시작 이후 고소장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변경할 경우, 수정 고소장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수정 고소장 통지서를 보낸 이후, 해결기간 및 해결 세션(다음 항 설명)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2. 해결 기간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 2004)에 의하면 적법절차 청문회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30일간의 해결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 기간은 학부모와 학교 측이 불일치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연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DEA 2004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해결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구로부터 분쟁 IEP에 대한 통지서를 받지 못 한 경우, 교육구는 적법 절차 고소를 받은 10일 이내에 교육구는 본 고소 내용에 대한 답장을 보내야 합니다. 답장에는 고소장 내용에 대한 교육구의 해결 제안 또는 거부 결정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답장에는 교육구 측의 제안 해결책 또는 고소 통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예, IEP 회의 재개회)

적법 절차 고소를 받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구와 회의를 포기한다는 합의 또는 중재 절차를 사용하자는 합의가 없는 한, 해결 회의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해결 세션의 목적은 적법 절차 고소내용을 토론하고 교육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결 회의에는 IEP 팀 요원, 결정권이 있는 교육구 대표, 학부모가 참여하게 됩니다.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한, 교육구는 변호사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해결회의에서 결의에 도달했을 경우, 법정 집행이 가능한 구속력 있는 합의서에 쌍방이 서명해야 합니다. 쌍방은 서명한 날짜부터 주중 3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고소통지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학부모가 고소 사항에 대한 만족한 해결을 못 받았을 경우, 적법절차 청문회가 시작 될 것이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 타임라인이 적용될 것입니다.

교육구와 귀하가 서면으로 해결 세션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해결 세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 청문회 타임라인이 연장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구가 여러번 세션 회의를 시도했으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구는 OAH에 적법절차 고소 취하를 요청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교육구가 해결 세션 일정을 잡자 않거나 해결 세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OAH에 적법절차 청문회 타임라인을 30일 이전에 종결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중재 대안

적법 절차 청문회 이전에 쌍방에서 중재 회의에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전 중재 회의는 오직 중재 절차와 변호사 및 채용한 옹호 인을 회의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유사합니다. 청문회 전 중재를 요청하면, OAH는 중재인을 배정하며 시간 및 날짜를 정할 것입니다. 중재인의 역할은 귀하 자녀 IEP에 관련한 교육구사이의 이견을 토론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 할 경우, 합의내용을 서면 합의문으로 작성하여 귀하와 교육구 대표가 서명한 후에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중재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청문회로 진행 합니다.

4. 적법 절차 청문회

적법절차 청문회는 좀 더 정식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본 청문회는 OAH에서 지명한 행정 재판관 또는 “청문회 재판관”이 주관합니다. 절차는 재판관 유사합니다. 증거를 제시하며 증인의 증언 및 반대 심문이 있습니다. 청문회 재판관은 증인을 질의하거나 전문인이 서로 논제를 토론하도록 하거나, 배정 장소를 방문하며 증인의 증언을 듣거나 독립적 평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청문회 재판관의 역할은 주(State) 및 연방 무료 및 적절한 공립 교육(FAPE) 방침에 의거하여 자녀가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제안 받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위반을 FAPE의 거부라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절차상 위반 주장에 대해 청문회 판사가 FAPE 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는 (1) 절차상 위반이 아동 FAPE에 침범했을 경우;(2) 아동이 IEP에 참여하는데 심각한 방해를 하여;(3) 교육 혜택에 피해를 미쳤을 경우.

적법절차 청문회는 청문회 재판관이 한 쪽의 요청을 받아드려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한, 30일 해결 기간 만기일 이후, 45일 이내에 개최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서면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귀하 와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특수 교육법 및 행정 재판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관할하는 공명하고 편견 없는 행정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청문회 10일 이전,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한 상대방 제안을 통보 받을 수 있다.
- 청문회 최소한 10일 전,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동한다는 통지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상대방이 청문회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 사본, 평가 내용, 증인 명단, 증언 영역을 청문회 5일 전에 받아볼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 변호사 또는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동하여 자문 받을 수 있다.
- 증거 제출, 서면 논쟁 및 구두 논쟁을 할 수 있다.
- 증인을 소환, 직면, 반대 심문할 수 있다.
- 청문회 및 사실 규명, 결정과정의 서면 또는 녹취 기록을 받을 수 있다.
- 청문회 서면 또는 녹취기록을 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 무료)

추가로, 공개 또는 비공개 청문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청문회에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며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재판관의 결정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판결 후, 90일 이내 주(State) 또는 연방정부 법정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경우, 청문회 이후 교육구와 합의 또는 법정 판결로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하지 못하고 적법 절차 청문회가 근거 없고 비합리적이며 사소했다는 법정 결론이 나왔을 경우, 법정은 교육구 변호사 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 적법 절차 고소를 부당한 이유, 예를 들어, 괴롭힘, 시간 끌기, 또는 재판 비용을 늘리기를 위한 목적 진행 됐다고 판결 할 경우, 귀하 또는 귀하 변호사로 하여금 교육구 변호사 비용 지불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적법절차 동안 학생 배정

특정한 대안 교육 배정(본 안내서의 “처벌에 관한 안내사항”을 참고)을 제외하고 적법절차 청문회로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또 차후 항소절차 동안, 교육구와 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한, 자녀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시작했을 당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배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만약 분쟁이 처음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귀하의 허가에 하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녀를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정합니다.

IDEA 파트 C(0-3세)- 파트B(3-22세)에전환 기간에의 서비스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아동이 3세가 넘을 경우, 아동은 더 이상 C 서비스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교육구는 받고 있던 C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적법절차 기간동안 분쟁이 없는 IE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절차를 사용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균일 소송절차는 특수교육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교육구에 제출된 지역소송에 관한 절차,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제출된 주(State) 소송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역 소송

교육구에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주(State) 또는 연방 법규를 위반했다고 생각될 때 다음 주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pecially Funded Programs, Compliance and Technical Support Branch
333 S. Beaudry, 1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원한다면 본 사무실에서 소장을 대신 써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주장하는 위반내용 발생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시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교육구는 60일 이내에 수사하고 소송을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 서면 결정을 받은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 또는 민사법을 통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 내용이 장애-근거 차별대우 때문이라면, 교육구 교육 형평 준수사무실(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때 소장 원본 및 교육구 결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State) 소송

지역 소송 대신, 직접 캘리포니아 교육부(CDE)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CDE는 소장에 다음과 같이 기재했을 때 개입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관할 연방법 위반사항이 있었다.
- 자녀가 IEP 규정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자녀 또는 아동이 집단으로 긴급한 신체 위협에 처했거나 건강, 안전, 행복에 위협이 있을 경우.
- 교육구가 연방 및 주(State) 적법절차 또는 적법절차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할 때.
- 교육구 외, 공공기관에서 특수교육 서비스 관련규정 또는 법규에 준수하지 않을 때.
- 교육구에서 지역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을 때.

서명한 소송 장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Procedural Safeguards Referral Service
Special Education Division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uite 2401
Sacramento, CA 95814

CDE에서 소장을 받으면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수사하여 결정을 서면으로 보낼 것입니다.

소송 해결 30일 이내에 CDE는 성공적인 소송해결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해결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미 연방 교육구(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주(State) 교육부 CDE에 소송 제기하는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CDE Quality Assurance Unit (800) 926-0648로 연락하십시오.

차별대우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성별, 성향, 인종, 민족, 선조, 원 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 또는 신체장애 또는 기타 지역, 주(State) 또는 연방 법규, 법령에 근거하여 보호받는 것에 대한 차별대우 또는 괴롭힘이 없는 작업 및 학업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타이틀 IX (성별), 타이틀 VI(인종, 피부색, 원 국적),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정신 또는 신체장애) 타이틀 II에 해당하는 것은 불법 차별대우이며 교육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괴롭힘은 학생 또는 직원을 향한 위협적 또는 학대 행동으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므로 범법 학생 또는 직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괴롭힘은 여러 가지 유형이며 말로 괴롭히는 것, 욕질, 그림 및 글로 쓴 것, 또는 신체적 위협 또는 굴욕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차별대우 금지 방침은 교육구 직업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 및 활동, 입학 또는 출입, 취직이나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영어 실력의 저조함으로 인해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입학 또는 참여를 제지받지 않을 것이다.

불법 차별대우/괴롭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인종범죄를 금지하는 교육구 방침에 대한 추가 정보는 모든 학교 및 사무실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구 의도는 이러한 방침을 모두 철저히 인지시키고 교육 서비스 및 기회에 있어 불법 차별대우로부터 최상의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모든 직원은 직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모든 학생들이 적절하고 평등한 배려 및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언사, 몸짓, 행동, 품행을 이에 합치해야 한다. 학생들의 장애에 근거한 차별대우/괴롭힘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비윤리적이며 관용하지 않을 것이다. 본 방침의 위반은 모두 수사하고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구의 각 부서, 사무실, 지사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본 방침에 대한 뚜렷한 집행 의무가 있다.

집행부 직원, 행정관, 모든 부서, 소 교육구, 지역 학교 행정관들에게는 본 방침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교육구는 소송제기인 또는 소송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교육구 차별대우 금지 방침에 대한문의 또는 차별대우/괴롭힘 소송 제기에 대한 안내사항이 필요할 경우, 문의할 수 있는 곳은:

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장애-근거 괴롭힘은 학생에게 장애를 근거하며 위협적 또는 학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지장을 주거나 거부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행위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는 말로 하는 것과 험담하는 것, 말로하지 않고 그림 또는 글로 하는 것, 신체적 위협, 유해감, 또는 모욕감을 주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불법 차별대우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행동자체를 환영하지 않으며, 극심하거나 침투성이 있으며 개인의 교육적 또는 작업 환경을 비합리적으로 파괴하거나 교육 또는 작업 환경을 반드시 해롭게 조성했다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구 추천 또는 허가하지 않은 사립학교 배정 환불 안내

교육구가 아동에게 적절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교육구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귀하가 자녀를 사립 시설 또는 사립학교에 보낼 것을 선택했다면, 교육구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서비스나 사립학교 교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이 예전에 교육구 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았는데 귀하가 교육구 허락 또는 추천 없이 사립학교에 등록한 경우, 아동이 사립학교에 등록하기 전, 교육구에서 때 맞춰 아동에게 적절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법정 또는 적법절차 청문회 재판관이 교육구로 하여금 부모에게 사립학교 등록비용을 환불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통보가 없었을 경우, 환불이 거부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교육구 배정을 거부한 다는 것.
- 배정에 관한 본인의 우려사항 및
-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할 것이며 교육구 환불을 요구한다는 것.

자녀를 공립학교에 전학시키기 전 본 통지서를 참여한 가장 최근 IEP회의에서 IEP 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전학시키기 10일 전에 교육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아동을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기 전에 교육구에서 학부모에게 적절히 자녀를 평가하려는 의도를 통보했으나 부고가 자녀를 평가에 데려오지 않았을 경우, 교육구는 환불을 삭감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학부모의 행동이 비합리적이란 판결할 경우 법정도 환불 거부 또는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문맹인 또는 영어를 쓸 수 없을 경우,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해를 입힐 경우, 학교에서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방지했을 경우와 같은 이유로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환불을 삭감 또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징계 관련 안내

장애 학생들은 교육구 학부모 학생 안내서의 행동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행동 규정을 검토하여 학교에서 행동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가 검토하십시오. 학교에서 자녀가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하 또는 IEP 팀 요원이 IEP를 요청하며 적절한 교육, 학생의 행동을 개선 할 수 있는 행동 지원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행동 문제가 심각할 경우, 귀하 또는 교직원인 행동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동 평가 결과에 따라 행동 지원 계획을 작성 또는 수정하거나 행동 교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행동 규정을 위반한 장애학생을 현 배정에서 적절한 잠정 대체 교육 환경(appropriate 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IAES)으로 배정, 다른 환경, 10일 이하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출석일 10일 이상의 배정 변경을 제안 할 경우(예, 정학, IAES 또는 퇴학) 최대한으로 빨리, 출석일 10일 이내에, IEP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규정 위반이 학생의 장애 현상에서 오는 것이지를 경정해야 합니다. IDEA 규정에 의해 아동의 행동이 장애 현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1) 아동 행동이 장애와 직접적 또는 상당한 연관이 있을 때, (2) 아동의 행동이 교육구에서 IEP를 실행하지 않아 발생했을 경우.

IEP 팀이 학생의 장애 현상에서 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학교측은 일반 학생과 같은 방식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교육 배정 변경이 결정되면 IEP 팀이 이를 결정합니다. 새 배정 장소에서 아동은 계속 교육 서비스를 받을 것이며 일반 교육 참여 및 IEP 목표를 계속할 것입니다.

IEP 팀이 학생의 비행이 장애 현상이라고 결정할 경우, 학부모와 교육구가 배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 교육구가 무기, 마약, 심각한 상해에 의해 학생을 IAES로 보내지 않은 한, 학생은 징계 이전 배정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추가로 이전에 행동 교정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구는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미 행동 교정 계획이 있을 경우, IEP 팀은 필요에 따라 문제 행동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검토하고 수정할 것입니다.

학생이 무기를 소지했을 경우, 알고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규제 약물을 판매 또는 판매 도모했을 경우, 교정, 학교 주변, 학교 행사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교직원은 학생의 비행이 학생의 장애 현상인가를 결정하는 동안 학생을 출석일 45일 이하 IAES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비행이 무기, 마약, 심각한 상해가 아닐 경우, 학생이 계속 현 배정에 있을 경우, 타인 또는 다른 학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교육구측에서 생각할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청문회에서 결정에 도달하는 동안, 청문회 판결인은 45출석일 이내의 IAES 배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벌에 따른 (1)배정 또는 (2)장애 유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결정 또는 결론을 신속 적별 절차 청문회를 통해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신속 청문회의 타임라인은 비 신속 적별 절차 청문회보다 일정이 빠릅니다. 신속 청문회 일정은 신청 학일 20일이며 청문회 10일 이내에 결정에 도달해야 합니다. 신속 청문회 절차동안 교육구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자녀는 IAES 배정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IAES에 있는 동안 아동은 계속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을 것이며 일반 교육 참여 및 IEP 목표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자격이 아직 없는 학생에 대한 보호사항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자격 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교육구에서 아동이 장애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경우, 아동은 상기 언급한 보호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문제 발생이전 아동의 장애사항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1.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교육구 행정관 또는 교사에게 부모가 서면으로 보냈을 경우.
2. 부모가 특수교육 평가를 요청했을 경우 또는,
3. 아동 교사, 교육구 행정관 이 특정 행동 패턴에 대한 우려를 행정관에게 표시했을 경우.

부모가 평가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했을 경우, 교육구는 입장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평가 결과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이 안될 경우, 또는 부모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속조항 허락을 취소했을 경우 역시 공식 입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아동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학생 훈육과 같은 시기에 평가를 요청할 경우, 교육구는 신속하게 평가를 할 것이며 평가가 끝날 때까지 아동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교육배정에 계속 다니며, 이는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다. 아동이 IDEA에 해당 할 경우 교육구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해결 의무가 있으며 본 안내서에 언급한 절차상 보호조항을 따라야 한다.

범죄 보고

IDEA는 교육구 및 직원이 장애 아동의 범죄를 해당 치안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다. 또 법규에 따라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다. 장애아동의 범죄행위를 교육구가 보고할 경우 교육구는 특수교육 및 훈계기록을 해당 치안당국에 보낼 것이다.

대리 부모를 위한 정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구는 학생에게 대리부모가 필요한 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대리 부모를 선임한다:

- 부모 또는 보호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을 때:
- 교육구에서 적절히 노력한 후에도 부모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또는
- 아동이 주(State) 보호를 받고 있을 경우.
- 법정에서 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한 했을 경우.
- 청소년이 집이 없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양육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선임한 대리부모가 학생 또는 학생 대리인과 이권 또는 이해상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추가로, 선별된 사람은 학생을 대표하기 적절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리부모는 교육구에 직원일 필요는 없다. 교육구로부터 대리 부모 비용을 지불 받는다고 해서 꼭 교육구 직원은 아니다.

대리부모는 아동의 특수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식별, 평가, 교수 계획 및 발전, IEP 검토 및 수정 절차에서 아동을 대표할 수 있다. 대리부모는 특수교육 절차 및 목표를 허가하는 서명을 할 수 있다.

대리부모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는 부정, 무모함, 악의 있는 행동, 태만하지 않은 한 캘리포니아 주(State)의 추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주 나오는 두문자어

APE	Adapted Physical Education	특수 고안 체육
ASL	American Sign Language	미국식 수화
AT	Assistive Technology	보조 기구
BIP	Behavior Intervention Plan	행동 교정 계획
BSP	Behavior Support Plan	행동 지원 계획
CAC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교육부
DIS	Designated Instruction and Services (Related Service)	지정교수 및 서비스(관련 서비스)
ESY	Extended School Year Services	연장 수업 서비스
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	기능 분석 평가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적절한 무상 공공 교육
504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1973년 사회 복귀법 504조
IDEA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인 교육법
IEE	Independent Education Evaluation	독립 교육 평가
IEP	Individual Education Program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
ITP	Individual Transition Program	개별적 전환 프로그램
LAUSD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최저 제한적 환경
LEP	Limited English Proficient	영어 미숙
NPA	Nonpublic Agency	사립 기관
NPS	Nonpublic School	사립학교
OCR	Office of Civil Rights	인권 사무실
OT	Occupational Therapy	작업 치료
PT	Physical Therapy	물리 치료
RSP	Resource Specialist Program	특수 자원 프로그램
SDP	Special Day Program	특수 학급
SST	Student Success Team	학생 성공 팀

다음 언어의 안내서가 있습니다.

알르메니아	중국
영어	한국
소련	스페인
베트남	

지역학교에 있는 안내서

- *Are You Puzzled By your child's Special Needs?*
- *The IEP and You*
- *Informal Dispute Resolution for IEP Disagreement*
- *The ITP and You*
-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
- *Section 504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 *Complaint Response Unit/Parent Resource Network*
-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Other Information Resources

특수 교육에 대해 추가 안내가 필요하거나 자녀 교육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하단 모든 곳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교사
- 자녀 학교 교장
- 특수 교육 지원부서 행정관

North Support Unit for Local Districts 1 and 2
(818) 256-2800

Central/West Support Unit for Local Districts 3 and 7
(323) 421-2950

East Support Unit for Local Districts 4 and 5
(323) 932-2155

South Support Unit for Local Districts 6 and 8
(310) 354-3431

